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박희승·서영교·이훈기

윤준병 • 이원택 • 윤건영

문금주・강유정・위성락

오세희 • 전용기 • 이재관

이해식 • 이성윤 • 정진욱

김태선 · 김정호 · 김 윤

이병진 · 최민희 · 문대림

소병훈 · 이재강(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균 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 멸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 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29조제1항 및 제29조의3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제8호 중 "건축"을 "건축·운영"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산·학·연 클러스터에"를 "혁신도시 내"로, "건축"을 "건축·유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혁신도시 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①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u>한다</u> .	<u>하며,</u>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	
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	
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u></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	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	2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 ③ ④ (생 략)
-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저 (생 략)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 7. (생략)
 -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 12. (생략)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조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2
1. ~ 7. (현행과 같음)
8
<u>건축·운영</u>
9. ~ 12. (현행과 같음)
세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
원)
<u>혁</u>
<u> 신도시 내</u>

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	
학에 대하여	시설의 <u>건축</u> 에 필	건축·윤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